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검 토 보 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50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개관	5
2.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안의 추진 경과 및 민주시민교육 현황	9
3. 법 제정의 필요성	12
4. 주요 조문별 검토	14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기본원칙(제1장,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4
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제2장 제6조·제7조·제12조 및 제3장 21조)	18
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22
라. 민주시민교육원 및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3장, 제13조·제14조·제16조)	25
바. 보칙(제4장,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34
사. 부칙	3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4.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 필요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선거·정치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의 문제해결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능력, 허위·조작정보 판별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사회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2020년 10월 기준 46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0.1%에 불과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21조).
-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마.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3조).

사.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서, 본칙 4개장 2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7조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제8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제9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1조	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13조	민주시민교육원
	제14조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제15조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

구분	조문 내용	
	제16조	지정취소 등
	제17조	민주시민교육기관 경비지원 등
	제18조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협력
	제19조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제20조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보고 등
	제4장 보 칙	
	제22조	청문
	제23조	지원된 경비의 반환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교육원의 설립준비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 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 단위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셋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특수법인으로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과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분	행정기관	위원회	지원기관	수행기관
중앙	행정안전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행안부장관 소속)	민주시민교육원 (독립 법인)	
	·기본·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교육원 지원 ·교육원 원장 임명	·기본계획 심의·의결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 ·기관 간 협력·운영지원 ·교육원 원장 추천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및 교육센터지원	
광역	광역자치단체	(의무)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의무)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기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위원회 운영 ·교육센터 지정, 지원 ·교육기관 등록 ·협의회 구성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사업조정 ·유관기관 협력 증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교육기관 지원 ·교육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교육수행
기초	기초자치단체	(임의)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시·군·구청장 소속)	(임의)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기관
	·지역위원회 운영 ·교육센터 지원 ·협의회 구성	·사업조정 ·유관기관 협력 증진	·교육기관 지원 ·연계체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교육수행

※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재구성¹⁾

1)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원, “교육센터”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교육기관”은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의미함.

2.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안의 추진 경과 및 민주시민교육 현황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제21대 국회까지 총 14건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²⁾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의안명	발의의원 (일자)	주요내용
15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박명환 (’97.10.31.)	국회 소속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시민교육진흥법안	김찬진 (’00.01.03.)	총리 소속 시민교육위 설치
17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은영 (’07.06.05.)	국회 소속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19대	선거정치교육지원법안	황영철 (’13.05.20.)	선관위 소속 선거정치교육원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언주 (’15.01.22.)	독립기관인 교육위, 교육원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15.02.05.)	행자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20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16.09.19.)	행자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16.11.14.)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실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17.08.30.)	선관위 소속 민주시민정치교육원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17.11.13.)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소병훈 (’19.03.07.)	총리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2) 그 밖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20대 국회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철희의원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박찬대의원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음.

구분	의안명	발의의원 (일자)	주요내용
21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20.06.01.)	행안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 (’20.11.27.)	행안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21.04.16.)	선관위 소속 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1997년부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4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433,9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³⁾

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교육부가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⁴⁾ 2022년에는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음. 교육부는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및 학생 참여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및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교육 및 학생참여 교육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4년 6월말 현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조례는 총 80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3)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미래정치 지도자 의회연수 과정”, “민주시민 의회연수”, “청소년 의정체험교실” 등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나 “어린이국회” 프로그램도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동 계획에 따르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비전 하에 “민주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들 조례는 대체로 합의제 자문기관의 설치, 종합계획·시행계획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의 민간위탁 근거,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 조례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등 해당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⁵⁾를 두고 있음.

5) 참고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4조는 도지사로부터 하역금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직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경기도는 이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법 제정의 필요성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체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적 원리로서 민주주의의 중요성, 「교육기본법」 제2조6)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는 교육의 이념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 분야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화함으로써 그 체계적 실시를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음.⁷⁾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이념적 속성,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 및 단체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교육현장, 교육대상자, 사회적 개별 현안 등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자율성에 입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민주시민

6)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법교육지원법」, 「경제교육 지원법」, 「식생활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등 특정한 교육 분야에 관한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됨.

8) 제정안 제2조제1호는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교육의 실시와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여 일정한 체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적 장치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적·정치적 속성 등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수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독립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핵심 내용은 주권의 실질적 실천인 선거권, 참정권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공정성·중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을 주무부처하는 방안을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기관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기본원칙(제1장,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갖추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및 시설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기반하여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으로 하고, 이 법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갖추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또한, 제정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2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법체계적인 측면 또는 입법적 실효성의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⁹⁾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안 제5조), 다른 법률에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는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안 제2조제1호),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및 제15조의2¹⁰⁾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교육이나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양양을 위한 계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법무부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교육 중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 교육부가 「교육기본법」 제2조¹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및 학생 참여 교육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¹²⁾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참여교육을 통해 실시되는 평생교육¹³⁾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와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양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된 교육 등이 모두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볼 때,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추후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의 선언적 규정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1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제2장 제6조·제7조·제12조 및 제3장 21조)

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7.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 및 협업연결망 구축·강화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의 시행·평가·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21조(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보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과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2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고 또는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안 제21조).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을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서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국가 행정사무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특정 분야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례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제정안과 유사하게 행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적 원리로서 민주주의의 중요성,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속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수행이 안 제3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안의 내용이 이를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점,¹⁴⁾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을 관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주민자치 및 참여라는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그 밖에 필요한 행정수단에 관한 사항을 국가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등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4) 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핵심적 내용은 주권의 실질적 실천인 선거권,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특히 선거·정치분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 차관
2. 국회에서 추천하는 10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동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1조).

행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1조는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및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위원회의 업무, 구성방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뒤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시·도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 여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및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

하여 해당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이후에도 개최 건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 중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성격·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라. 민주시민교육원 및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등(제3장, 제13조·제14조·제16조)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13조(민주시민교육원) ① 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교육원에는 원장(이하 “민주시민교육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민주시민교육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사업에 대한 지원
5.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6.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7. 제14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협력 지원
10.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2.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4.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교육 운영 등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3조).

또한, 시·도 차원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자율적으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4조), 일정한 경우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16조).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한 분야로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속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과 관련한 연구 활동이나 그 밖에 공적 사무를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제도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한편, 공익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단체를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지역별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로 여건에 부합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로, 2024년 6월말 현재 시행 중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조례 중 일부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등 해당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¹⁵⁾를 두고 있음.

15)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운영을 위하여 조직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센터는 제1항

다만, 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민주교육원 및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필요성, 해당 기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비 보조와 관련한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로 하여금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제2항은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호), 제정안은 안 제13조제6항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8호).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원이 구축·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과 별도로 각 지역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정보시스템이 중앙과 지방 상호 간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

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고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입법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⁶⁾

셋째, 제정안은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동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지역별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되 해당 사무 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법령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관 설치 또는 지정은 행정 업무의 수행 주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 또는 지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⁷⁾

1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 타 입법예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마.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설치 등(제3장, 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15조(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 ①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주시민교육기관 경비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기관(안 제15조)의 등록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7조).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

민주시민교육기관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및 시설로서 일선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민주시민교육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 등 교육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등록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조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육 운영에 필요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적 등록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제는 강학상의 등록¹⁸⁾에 해당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허가과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와 같은 성격의 등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허가 제도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의 취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지원 또는 육성의 대상을 선정하는 제도로서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⁹⁾

18)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19)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바. 보칙 (제4장,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4장 보칙

제22조(청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과 민주시민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된 경비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교육원·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 또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하고(안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 이 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안 제24조 및 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민주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안 제25조).

제정안의 내용은 일반적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칙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다만, 안 제26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장 보칙”이 아니라 “제5장 벌칙”을 신설하여 벌칙에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임.

사.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정안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안 부칙 제1조), 민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게 하며(안 부칙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하고, 설립위원은 민주시민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민주시민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3조).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7